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설치
및운영에관한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조기 성과 창출 및 대내·외 정책기능 강화를
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지원하는 부위원장직을 신
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3조 일부개정)

- 1)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
- 2)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으로 임명

나. 위원장 직무 대행(안 제6조 일부개정)

- 1)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
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명”을 “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한다”를 “한다)과 부위원장(이하 “부위원장”이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위원이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	제3조(구성) ① -----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 장”이라 한다)은 위촉위원 중에 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	③ ----- ----- 한다)과 부위원장(이하 “부위원장”이라 한다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(생 략)	제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(현행 과 같음)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<u>위원</u> 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부위원장이</u> 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715